

**【별표】**

**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**

**1. 일반기준**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**2. 개별기준**

(단위 : 만원)

위 반 사 항	근거조항	부 과 금 액		
		1차	2차	3차
1.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	법 제21조제1항	100	150	200
2.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	법 제21조제2항 제1호	20	40	60
가.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		
나.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10	20	30	
3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한 때	법 제21조제2항 제2호	10	20	30
가.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				
나. 법 제11조 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20	30	40	
4.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21조제2항 제3호	20	40	60
가.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				
나.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	10	20	30	
5.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	법 제21조제2항 제4호	10	20	30
6.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	법 제21조제3항	10	20	30
가. 제17조 제1호~제6호를 위반한 때				
나. 제17조 제7호~제10호를 위반한 때	30	40	50	